

검 토 보 고 서

■ 조례명

- 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■ 주요내용

- 안 제2조 제2호중 <“일비”라 함은 영 제15조 의한 “일비”를 말한다> 에서 <“회의수당”이라 함은 영 제15조의 “회의수당”을 말한다>로 한다.
-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“일비”를 “회의수당”으로 한다.

■ 개정사유

-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14877호('95. 12. 30)로 개정공포되어 “일비”가 “회의수당”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자구를 수정코자 함.

■ 검토결과(의견)

- 본 개정조례안은 문팔갑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외 4인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으로써 안 제2조 제2호중 “일비”를 “회의수당”으로, 안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“일비”를 “회의수당”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개정조례로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.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3호중 '일비'라 를 '회의수당'이라 로 한다.

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중 '일비'를 '회의수당'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조표

현행	변경
<p>제2조 (정의) 생략 1~2 (생략) 2. 생략 3. <u>'일비'</u>라 함은 영 제15조에 의한 <u>일비를 말한다.</u></p>	<p>제2조 (정의) (현행과 같음) 1~2 (현행과 같음) 2. 현행과 같음 3. <u>'회의수당'</u>이라 함은 영 제15조 <u>회의수당을 말한다.</u></p>
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생략 1.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,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</u>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. 직무상 상해로인한 장애의 경우 는 의원 당해년도 <u>일비의</u> 1년분 에 상당한 금액 3. (생략)</p>	<p>제4조 (보상금 지급기준) ①현행과 같음 1.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<u>회의수당</u> - - - - - - 2. - - - - - - - - - - <u>회의수당</u> - - - - - - 3. (현행과 같음)</p>